# **⑥** 복지 및 민간지원

# 6-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기장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충 지원 (082)	보육기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128,702	13,690	17,267	49,881	37,360	3,439	2,320	0	<b>4,74</b> 5
국 비	72,750	12,279	9,369	26,836	22,426	1,790	50	0	0
시·도비	35,020	993	6,592	16,427	8,829	572	387	0	1,220
시·군·구비	20,932	418	1,306	6,618	6,105	1,077	1,883	0	3,5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 स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26,685	278,709	294,471	345,124	469,707		
사회복지분야(B)	64,486	70,032	89,053	113,865	128,703		
사회복지분야비율(B/A)	28.45	25.13	30.24	32.99	27.4		
인구수 (C)	108,095	114,566	132,507	144,748	153,09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97	611	672	787	84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맞춤형 복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 증가 및 보육·노인 관련 시설 증가로 복지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고
계		32,082	6.83%	
민간경상보조 (307-02)		5,517	1.17%	
사회단체보조 (307-03)		273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469,707	2,074	0.4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848	2.31%	
사회복지보조 (307-11)		6,700	1.43%	
민간자본보조 (402-01)		6,670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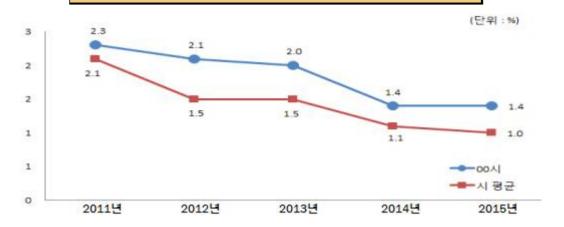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 च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6,685	278,709	294,471	345,124	469,707		
지방보조금(민간)	5,961	8,288	38,562	37,665	32,082		
비율	2.63%	2.97%	13.10%	10.91%	6.83%		

####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참조

####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b>ኔ</b> ነነል!		1월 기. 경 되		
총 사업 수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평가결과
211개 사업	10460	8501.7	1958.3	별지 참조

▶ 평가등급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이상~90점미만), 보통(60점이상~80점 미만), 미흡(50점이상~60점 미만), 매우미흡(50점 미만)

####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별지참조

#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장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에코 크린 부산	16,723	참여제한자 부정수급	′15.10.15.	보조금환수명령 (16,723)
어선노후 기관 및 장비 지원사업	오정미	14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5.12.22	보조금환수명령 (14)
2010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기장 영어조합 법인대표 김태봉	914,000	사후관리기간 내 시설경락으로 인한 소유자변경	<b>'15.07.23</b>	보조금환수명령 (914,000) ※ 환수명령 불복으로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

#### 6-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기장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469,707	1,192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TT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26,685	278,709	294,471	345,124	469,707		
행사·축제경비	1,422	2,123	304	300	1,192		
비율	0.63	0.76	0.1	0.09	0.25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4 호우 피해로 인한 행사의 취소 등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행사 축제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